

## 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(제22조)

### 제22조(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)

① 임직원은 **대가를 받고** 외부강의 ·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장에게 **사전에** 신고하여야 한다.

※ 단, **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 포함)인 경우는 제외**

1. 신고 대상 :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**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**

2. 신고 절차 : 외부강의 · 회의 등을 **하기 전에** 요청자, 요청 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기재하여 **사장에게 신고**

3. 대 가 : 요청자가 **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**을 초과할 수 없음

#### 외부강의 대가기준(임직원행동강령 별표2)

(단위: 천원/ 1시간)

| 구 분    | 기관장·임원 | 부장급 이상 | 기타 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상한액    | 300    | 230    | 120 | 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 |
| 1시간 초과 | 200    | 120    | 100 |             |

※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, 기준 초과 금지(상한액 개념)

### 참고사항(사건사례)

모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원~90만원까지 모두 510만원의 강의를 지급받았음에도, 수령한 강의로 일부를 미신고함

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(4급 및 6급)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원의 강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음

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, 일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임

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**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**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